



(특)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참조)

제 목 명예해양수산물 추천 요청

1. 우리협회 해외수산물협력센터에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라 현재 9명의 명예해양수산물관을 위촉 및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해당권역별 원양산업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2. 동 명예해양수산물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김정봉 명예해양수산물관(세네갈)이 2018년 1월 3일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 대상자 추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김정봉 명예해양수산물관(세네갈)의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지역불문) 대상자 추천을 요청 드리오니, 붙임1을 참고하여 붙임2의 형식으로 2017.11.24(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위촉 대상지역 명예해양수산물관 현황 1부.

2. 명예해양수산물관 추천서 1부(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 공지사항 참조). 끝.

(특)한 국 원 양 산 업 협 회



수신자 : 전 회원사, 해외수산물투자협의회 회원사

담당

이희진

팀장

김영수

전결 11/20
센터장 최경삼

협조자

시행 해외수산물협력센터-577

(2017. 11. 20) 접수

(. .)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 www.kosfa.org

전화 044)868-7362 전송 044)868-7840 / 담당자 이메일 hj.lee@kofci.org

붙임 1

재위촉 대상지역 명예해양수산물 현황

□ 재위촉 대상지역 명예해양수산물 현황

담당지역	성명	임 기	주요경력	비고
세네갈	김점봉	'16.01.04 ~'18.01.03	· 모리타니 선원(2등 항해사)('89~'92) · 모리타니 선원(1등 항해사)('92~'94) · 現 냉동공장('94~) 및 제2공장('13~) 설립 운영	

□ 참고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 자격 :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임무 :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대한민국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서

■ 추천지역 :

(1) 성명	(한자) (영문)		
(2) 국적		(3) 현지 거주(또는 체류)기간	
(4) 주민등록번호 또는 I.D. No.			
(5) 현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6) 현 직업		(7) 수산물 관련 업무경력 유무 및 경력기간	년
(8) 추천 대상자 주요 이력사항			
(9) 추천 사유			
상기인을 대한민국 명예해양수산물관으로 추천합니다. 2017. . . 추천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			